

●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5-355호

2025년 8월 11일 발표한 「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」 중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의 해제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8월 18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중 식품접객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

I. 특별조치의 취지

- 식품접객업체 중 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,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함으로써 서민경제와 밀접한 식품접객업의 활발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
- 다만,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식품위생과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 차원에서 위생·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와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에 따른 처분 등은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함

II. 특별조치의 대상

- 해당업소
-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, 일반음식점영업, 제과점영업

III. 해제되는 행정제재의 범위

1. 해제 대상 행정제재

- 개요

- 해당 업소가 2024. 2. 7.부터 2025. 6. 30.까지 받은 1차 위반 과태료 처분, 2024. 2. 7.부터 2025. 6. 30.까지 받은 1차 위반 행정처분 기록

- 단, 2025.6.30.까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해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해제되는 행정제재

-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
- 영업신고증 등을 업소 안에 보관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
-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
- 간판에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
- 영업소 내·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

2. 해제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정제재

- 아래에 열거한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
- 해제 기간(2024. 2. 7.부터 2025. 6. 30.까지)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2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
- 해제 기간(2024. 2. 7.부터 2025. 6. 30.까지)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2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

IV. 행정제재 해제의 효과

1. 개요

- 해제 대상 행정제재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2025. 7. 1.자로 해제
- 특별조치는 1차 위반 행정제재 기록에 따른 해제에 국한하며,

- 이미 처분된 과태료, 시정명령 등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, 기타 민·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

2. 처분 종류별 해제의 효과

- 과태료
 - 2024. 2. 7.부터 2025. 6. 30.까지 처분 받은 1차 위반 기록을 2025. 7. 1.자로 해제
- 시정명령
 - 2024. 2. 7.부터 2025. 6. 30.까지 처분 받은 1차 위반 기록을 2025. 7. 1.자로 해제

3. 행정제재 처분 경과조치

- 2025. 6. 30. 이전에 적발되어 2025. 7. 1. 이후에 1차 위반으로 처분한 기록은 적용하지 아니함

V.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

1. 시행방법

-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1차 위반 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,
 - 관련기록에 본 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,
 - 이후 2차 위반 처분 사유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 처분 기준을 적용
-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
 - 관련기록에 「2025. 8. 11일자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조치」라는 내용 표기
- 본 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 · 관리함

2. 결과의 확인신청

- 특별조치 대상업소는 특별조치에 따라 행정제재가 해제되어 있지 않은 경우,
 - <별지 관련 서식>에 따라 처분청에 특별조치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
- 신청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대상업소 등에 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,
 - 해제대상인 경우, 관련 기록에 부기

3. 질의

-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아래의 부서로 질의
 - 식품안전정책과 홍정미 연구관(☎043-719-2032), 손의재 주무관(☎043-719-2014)

항목	기재사항				
① 업체명(상호)					
② 인허가번호					
③ 영업의 종류					
④ 대표자					
⑤ 소재지(주소)					
⑥ 전화번호					
⑦ 행정제재 내용	가. 처분기관				
	나. 제재처분유형				
	다. 제재처분일	년	월	일	
	라. 제재처분기간	(처분시작일) (처분종료일)	년	월	일
	마. 제재처분 근거법령				
	바. 제재처분 사유				

(주) 가.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기관

- 나. 과태료, 시정명령 중 기재
- 다. 처분통지서에 따른 처분일자 기재
- 라. 처분효력 시작일 및 종료일 기재
- 마. 제재처분의 근거법령 기재 (식품위생법 제71조 또는 제101조)
- 바. 근거법령상의 위반사유 기재[위생교육 미실시, 면적 변경 미신고 등]